

전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10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F

2. 유한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F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1. 9.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2543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F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12125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F은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6. 15. 접수 제684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봐도 이 사건의 쟁점, 즉 주식회사 C1) 을 대표 내지 대리한 F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나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F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

1) 2021. 1. 9.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C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